

- 한국노총경북본부안동지역지부 -

조직운영규칙

(제정) 2020년 09월 08일

(개정) 2021년 04월 30일

(개정) 2022년 08월 29일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총경북본부안동지역지부
FKTU GYEONGBUK REGIONAL OFFICE ANDONG BRANCH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4p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4p
제3조 [법인]	4p
제4조 [사업]	4p
제5조 [회의]	5p

제2장 조직

제6조 [구성 및 가입절차]	5p
-----------------	----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6p
제8조 [의무]	6p
제9조 [의무금]	7p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0조 [기관]	7p
-----------	----

제4장 /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 [대의원대회]	7p
제12조 [소집공고]	7p
제13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8p
제14조 [임시대의원대회]	9p
제15조 [대의원의 임기]	9p
제16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9p
제17조 [대의원대회 운영]	9p

제4장 / 제2절 운영위원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10p
제19조 [소집]	10p
제20조 [기능]	10p
제4장 / 제3절 대표자회의	
제21조 [구성 및 소집]	10p
제22조 [기능]	11p
제4장 /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3조 [구성 및 소집]	11p
제24조 [기능]	11p
제4장 / 제5절 회계감사	
제25조 [회계감사위원회]	12p
제4장 / 제6절 회의 성립 및 의결	
제26조 [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	12p
제27조 [특별결의]	12p
제5장 임원	
제28조 [임원]	13p
제29조 [인준 및 인준취소]	13p
제30조 [임원]	14p
제31조 [선거]	14p
제32조 [임기]	15p
제33조 [상임고문]	15p
제6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15p
제35조 [사무국 운영세칙]	15p

제7장 조직 활동 및 쟁의지도

제36조 [조직활동]	15p
제37조 [쟁의지도]	16p

제8장 재정

제38조 [예산]	16p
제39조 [기금]	16p
제40조 [회계년도]	16p
제41조 [회계세칙]	16p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2조 [표창]	17p
제43조 [권리정지]	17p
제44조 [징계]	17p

부칙

제1조 [시행]	18p
제2조 [통상관례]	18p
제3조 [시행일]	18p
제4조 [시행일]	18p

조직운영규칙

(제정) 2020년 9월 08일

(개정) 2021년 4월 30일

(개정) 2022년 8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 및 시·도 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지역지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1. 조직의 명칭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북본부 안동지역지부라 한다. (약칭 : 한국노총 안동지부)라 한다.
2. 한국노총 안동지부의 사무소는 안동시에 둔다.

제3조 [법인] 한국노총 안동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안동지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추진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 활동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4.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 및 조정 활동
6.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조 [회의] 한국노총 안동지부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안동지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 [구성 및 가입절차]

1. 안동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 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
 - 나. 한국노총 회원 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
 - 다. 한국노총에 직 가입한 지역일반노조의 지부
2. 제1항 각호의 조직이 위치한 지역이 안동시,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영양군, 군위군 소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지자체 사업장도 안동지부에 가입할 수 있다.
3.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조직 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 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발전노조가 지역지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연맹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4. 제3항의 조직이 권리가 정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별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권리] 안동지부의 회원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안동지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안동지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의무] 안동지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한국노총 규약 및 지역지부 규칙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 기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제9조 [의무금] 한국노총 안동지부에 가입된 노동조합은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안동지부에서 정한 인당 500원의 의무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2. 40명 미만 노동 조합은 기본 의무금 20,000을 납부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0조 [기관] 안동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대표자회의
4. 상무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회계감사
7. 기타 지역지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4장 /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한국노총 안동지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하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 중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의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 월까지의 1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단,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1. 대의원은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되, 50명당 1명으로 배정하고, 단수 26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 배정한다.
2. 안동지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3. 각 회원 조직은 파견대의원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 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안동지부 여건에 따라 시행을 유보 할 수 있다)
4. 대의원 배정 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5. 조합원이 관할수역을 벗어난 시·군에도 분포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의무이행을 한 인근지역 조합원에 한해 대의원을 배정한다.
6. 대의원은 의무금을 납부한 조직에 직접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제13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 배정 결과 산별조직이 아닌 하나의 단위조직(노조)이 대의원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실제로 배정되는 대의원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제 14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항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15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활동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 및 심의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성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심의 및 결의
8. 지역지부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 17조 [대의원대회 운영]

1. 대의원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2.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 제2절 운영위원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및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지부 활동에 관한 사항
2. 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에 대한 사항
5.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 제3절 대표자회의

제21조 [구성 및 소집]

1.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대표자회의는 년4회 이상 개최한다.

3. 대표자회의의는 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2조 [기능]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회의
 - 가.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 나. 포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 다.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 라. 당면한 노동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마. 지역지부 부대사업 부서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바.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에 관한 사항
 - 사. 조직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지역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3조 [구성 및 소집]

1.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국장으로 구성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개최를 요구할 시 소집한다.

제24조 [기능]

1. 각 부서간의 업무 집행에 협조할 사항
2. 결의기관에 부의 할 의안 제출
3. 지역지부의 제반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제4장 / 제5절 회계감사

제25조 [회계감사위원회]

1. 회계감사는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2. 회계감사위원회는 연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대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내부·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 제6절 회의 성립 및 의결

제26조 [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 안동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7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 결의로 하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6. 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8조 [임원] 지역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지부 의장이라 함): 1명
2. 부의장 : 약간 명
3. 사무국장 : 1명
4. 회계감사위원 : 약간 명

제29조 [인준 및 인준취소]

- ① 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 ② 지역본부의장은 인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 ③ 의장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또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가 인준을 취소할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 ⑤ 인준이 취소된 의장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지역본부의장이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 ⑥ 의장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지부는 인준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⑦ 안동지부를 설립하는 년도에는 대표자회의가 대의원 대회를 갈음하여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대의원대회 기능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 가. 안동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라. 각 부서장 및 사무직원을 채용 및 임명 한다.
- 마.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바.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2.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안동지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리·운영 한다.

4. 회계감사 : 안동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 한다.

제31조 [선거]

- 1. 의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 2.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호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 3. 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선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32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3조 [상임고문] 안동지부는 대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임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안동지부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5조 [사무국 운영세칙] 안동지부 사무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고, 한국노총의 규정 및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7장 조직 활동 및 쟁의지도

제36조 [조직활동]

- 1. 안동지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2. 회원조직관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관의 조직분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노총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쟁의지도]

1. 안동지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 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 하였을 시 즉시 지역지부에 보고하며, 지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3. 안동지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지역본부 또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38조 [예산]

1. 안동지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2.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운영의 차질을 초래할 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 안동지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40조 [회계년도] 안동지부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21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회계세칙] 회계처리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2조 [표창] 의장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지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조합원 및 기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 [권리정지]

1.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정지가 보류된다.
2. 의무금 미납 사유가 장기적인 체불임금에 의한 것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 단서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 회원조직 또는 조합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지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대표자회의에서 징계한다. 다만, 징계결과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 본 규칙은 제정(2020년 09월 08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통상관계]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한국노총 규약과 통상관계에 따른다.
- 제3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04월 30일 부로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8년 08월 29일 부로 시행한다.